

2018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

▶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입니다.

| 담당기관 | 담당과 | 담당자 | 전화번호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농림축산식품부 | 재해보험정책과 | 과장 문석호 사무관 오재협 | 044-201-1791 044-201-1728 |
| 농업정책보험금융원 | 보험1부 | 부장 백종철 | 02-3775-6799 |
| NH농협손해보험 | 농업보험지원부 | 부장 강구하 | 02-3786-7631 |

I. 사업개요

1. 목적

-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

2. 근거법령

- 농어업재해보험법 제7조, 제8조, 제19조, 제20조 및 제25조의2

3.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| 구 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 | 2018년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합 계 | 383,723 | 382,849 | 383,081 | 383,477 | 414,710 |
| 보 조 | 217,233 | 215,862 | 215,978 | 216,176 | 232,836 |
| 자부담 | 166,490 | 166,987 | 167,103 | 167,301 | 181,874 |

* 자부담은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가능

4.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

- 사업시행기관 : 사업관리기관과 약정체결을 한 재해보험사업자
- 사업관리기관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

II.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

1. 사업대상자

-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

2. 가입자격 및 요건

- 사업실시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또는 법인
- 보험가입금액(생산액)이 200만원 미만인 농지는 보험대상에서 제외
 - 다만, 옥수수·콩의 보험가입금액(생산액) 100만원 이상인 농지, 벼·밀의 보험가입금액(생산액) 50만원 이상 농지는 보험 가입 가능
 - 가입금액 제한 없이 농업용시설물과 시설작물, 버섯재배사와 버섯작물은 경작면적 300m² 이상, 차(茶)는 1,000m² 이상일 경우 가입 가능

3. 세부 사업내용

(1) 보험대상 농작물 및 사업 지역

- 본사업 : 사과·배(적과전종합위험 포함)·단감·감귤·떫은감·참다래·자두·밤·콩·감자·양파·고구마·옥수수·마늘·매실·대추·고추·포도·벼·인삼·느타리·버섯·표고버섯·복숭아·시설작물(수박·딸기·오이·토마토·참외·풋고추·호박·국화·장미·멜론·파프리카·부추·시금치·상추·가지·배추·파·무·백합·카네이션)
- 시범사업

| 구 분 | 5년차 이상 | 4년차 | 3년차 | 2년차 | 1년차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작물명 | 복분자·오디·차·단감(적과전종합위험) | 사과(적과전종합위험) | 시설미나리·밀·양배추·오미자·떫은감(적과전종합위험) | 무화과·유자·시설쑥갓 | 메밀·브로콜리·양송이버섯·새송이버섯 |
| 작물수 | 4 | 1 | 5 | 3 | 4 |

*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대상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보험화가 곤란한 특정품종·특정재배방법·특정시설 등에 대해서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협의하여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험인수를 거절할 수 있음

○ 보험사업 실시지역 : 불임1

- * 신규 시범품목에 대한 보험사업 실시지역 대해서는 해당품목 보험판매 실시 4개월전까지 확정 통보

(2) 보험대상 재해의 범위

| 구분 | 대상 품목 | 대상 재해 | 비고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특정위험보장 | 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 | 태풍(강풍)·우박·지진·화재 (특약) 봄동상해·가을동상해·집중호우·일소피해·나무보상 | |
| | 인삼 | 태풍(강풍)·폭설·집중호우·침수·화재·우박 | |
| 적과전종합위험 | 사과·배·단감·떫은감 | (적과전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적과후) 태풍(강풍)·우박·집중호우, 화재, 지진 (특약) 가을동상해, 일소피해, 나무보상 | |
| 종합위험보장 | 참다래·매실·자두·복숭아·포도·유자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특약) 나무보상 | |
| | 밤·대추·오디·오미자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| |
| | 고추·마늘·양파·고구마·콩·옥수수·차·감자·양배추·밀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| 단, 감자, 고추는 병충해 보장 |
| | 농업시설·시설작물·버섯재배사·버섯작물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 (특약) 화재, 화재대물배상책임 | |
| | 벼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특약) 병충해(흰잎마름병, 줄무늬잎마름병, 벼멸구, 도열병) | |
| | 감귤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(11.30일 이전) (특약) 나무보상, 동상해(12.1일 이후) | |
| | 복분자 | (5.31일 이전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6.1일 이후) 태풍(강풍)·우박 | |
| | 무화과 | (7.31일 이전)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(8.1일 이후) 태풍(강풍)·우박 (특약) 나무보상 | |
| | 해가림시설(인삼)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·화재 | |
| | 비가림시설(포도, 대추) | 자연재해·조수해(鳥獸害) (특약) 화재 | |

(3) 보험 판매기간 : 불임1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기간 중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인수 제한할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미리 협의

(4) 보장유형 : 불임2

(5) 보험가입단위

- 농작물 : 필지에 관계없이 농지별로 가입
 - 다만, 벼의 경우 동일 계약자의 농지는 하나의 증권으로 보험 가입
- 농업용 시설물·시설작물, 버섯재배사·버섯작물 : 하우스 1단지 단위로 가입 가능하며 단지 내 인수제한 목적물 및 타인이 소유하고 경작하는 목적물은 제외
 - * 농지는 필지에 관계없이 실제 경작하는 단위이므로 동일인의 한 덩어리 농지가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있더라도 하나의 농지로 취급하고, 단지는 도로, 둑, 제방 등으로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는 경지 내에 위치한 시설물임
 - * 다만, 재해보험 가입자격을 갖춘 자의 행정구역상 하나의 里·洞 범위에 속하는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2개의 농지는 하나의 농지로 취급할 수 있음
 - * 농업용시설물은 가입자격 규모 미만의 단지가 인접한 단지면적을 합하여 가입 자격 규모이상이 되는 경우 하나의 단지로 취급할 수 있음

(6) 재해보험 가입절차(불임3 참조)

- 보험가입안내(지역 대리점 등) → 가입신청(재해보험가입자) → 현지확인(농지원장 작성 등) → 청약서 작성 및 보험료 수납(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산정) → 보험증권 발급
- 재해보험사업자와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(농·축협) 등에서 보험 모집 및 판매

(7) 보험료율 적용 및 할인 · 할증

- 보험료율 적용 : 주계약별, 특약별로 각각 시·군별 요율 적용
 - 다만, 농업용 시설물·시설작물, 버섯재배사·버섯작물은 시·군·구별 요율 적용
 - 사과, 배, 벼는 시·군별 보험요율의 분포를 고려하여 요율 상한선 설정 가능
- 보험료 할인 · 할증의 종류는 품목별로 다르며, 품목별 재해보험요율서에 따라 적용
 - 보험료 할인 · 할증 종류: 과거 손해율 및 가입연수에 따른 할인 · 할증, 방재시설별, 대상 재해별 할인, 품종별 숙기에 따른 할인·할증, 품종 비중에 따른 농지별 할인 · 할증, 전년도 무사고 할인 등

(8) 손해평가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「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」에 따라 손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, 손해평가 시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허위로 손해평가를 해서는 안 됨

(9) 보험금 지급시기

-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완료하고 보험금을 확정한 후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면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한 후 7일 이내에 지급
- 지급할 보험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해보험사업자가 추정한 보험금의 50% 상당액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 가능

(10) 재보험(붙임4 참조)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재보험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 체결
- 재해보험사업자가 보유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민영보험사와 재보험약정 체결을 통해 재보험 출재 가능
 - 민영보험사에 재보험을 출재할 경우에는 출재방식, 출재금액, 출재비율, 재보험요율 등 재보험계약내용 및 실적현황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

4. 지원대상 및 자금 사용 용도

-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재해보험가입자의 납입 순보험료 지원 : 50% 보조. 단, 아래 품목(5개)은 보장수준별로 40~ 60% 차등 보조
 - *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고 할 경우 『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여야함
 - * 경영체 미등록 농업인,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후 신청 (등록여부는 농업경영체 서버와의 연계를 통해 전산적으로 확인.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는 붙임5 참조)
 - *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손해조사비를 말함

| 구 분 | 품 목 | 보장수준 (%) | |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60 | 70 | 80 | 85 | 90 |
| 국고 | 벼 | 60 | 55 | 50 | 50 | 50 |
| 보조율 (%) | 배·단감·사과·떫은감 (적과전종합) | - | 60 | 50 | 40 | 40 |

- 재해보험사업자 운영비(재해보험사업자가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관리비, 영업비, 모집수수료 등 지원) : 100% 보조

5.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

- 순보험료 : 보험가입자별 지원한도는 없으며, 지원범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- 운영비 :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

6. 기타

- 본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농어업재해보험법」, 「농어업 재해보험법 시행령」, 「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농어업 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」, 「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, 「농작물재해보험 약관」과 기타 관련 법 규정에 의함
- 보험요율 적용, 보험료 할인·할증 적용 등은 금융감독원의 기초서류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-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 실시지역, 보험 판매기간, 보험가입단위 등 지침에 명시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농업정책보험금융원과 사전협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함
- 기타 위에서 정하지 않은 보험 상품 및 보험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업무방법에 따름

III.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계획 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세부사업 기본계획(사업대상, 지원조건, 보조율, 사업기간 등)을 확정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재해보험사업자에 시달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, 상품 및 제도 연구·개선, 손해평가사 교육, 재해보험 홍보 등 사업관리계획을 수립
- 재해보험사업자와 사업약정체결(법 제8조), 재보험사업약정체결(법 제20조) 실시

재해보험사업자

- 보험가입 촉진계획, 운영비 사용계획서, 손해평가인 교육계획, 보험상품 개선·개발 계획 등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

2. 보험 상품 개발 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보고한 상품개선안 등의 승인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농업인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보험 상품 및 손해평가 방법에 대한 연구 추진
- 현장의견·자체검토사항, 보험상품 및 제도개선 사항 등 검토
 - 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와 업무협의를 위하여 상품개선회의 개최
(농림축산식품부, 보험개발원 등 참석대상 확대 가능)
- 품목별 상품개선안, 보험료율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- 품목별 최종 상품개선안 재해보험사업자에 통보

재해보험사업자

- 농업인들의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상품 개발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상품연구에 협조하며 상품 개선사항 발굴에 적극 참여
- 보장내용, 보험료율 등 보험상품 변경사항 발생 시 상품개선안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
- 객관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보험료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와 재해보험 기초서류(사업방법서, 요율검증보고서 등)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

3. 사업시행 단계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품목별 가입시기와 지역별 예상 보험료를 지자체에 제공
- 재해보험사업자 및 지역 대리점에 대한 사업점검, 상품개선, 대농업인·지자체에 대한 제도 홍보, 손해평가사 교육 등 추진

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사업자는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세부시행에 따라 사업 추진
- 매월마다 가입실적, 보험금 지급 실적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
- 재해발생 시 신속한 손해평가를 실시하며, 보험사고 접수현황, 추정보험금 등 파악
- 농업인·지자체에 대한 상품내용 교육 및 홍보 실시
- 지역 대리점 등의 판매직원 및 손해평가인에 대한 상품교육·홍보 실시
- 판매 위탁계약을 체결한 대리점 등은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에 의하여 농가로부터 보험가입 신청 접수

4. 자금배정단계

농림축산식품부

- 재해보험사업자의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자금교부 신청,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검토결과를 근거로 자금을 배정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 가입현황서,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적정성 여부를 보고
-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재해보험사업자의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

재해보험사업자

- 분기별 자금집행 계획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를 첨부하여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 교부 신청
- 사업년도말을 기준으로 지급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

5. 이행점검단계

《사후관리》

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 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등이 농작물재해보험 사업 세부시행계획 등을 준수하여 사업집행이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
 - 철저한 사업추진 및 자금관리를 위해 수시로 모니터링 및 인수심사 등 점검 실시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농림축산식품부와 합동 또는 단독으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무건전성,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
- 사업시행기관 및 사업대상자(농업인) 자금집행 등 사후관리 점검
 - 점검대상 : 재해보험사업자, 위탁계약 체결한 지역 대리점, 보험가입자
 - 점검일정 : 분기별 1회 이상(보조금 부당집행 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)
- 점검항목
 - 자금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: 사업계획에 따른 보험계약 체결 현황 및 보조금 집행 현황, 사업시행지침 이행여부 등
 - 사업실적 :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실적 등

《제재》

재해보험사업자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판매위탁 계약을 체결한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 등에 다음의 부당사유가 확인되었을 경우 당해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보고
 -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
 - 허위 또는 가공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조금을 집행할 때
 -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
 - 기타 약정사항 미 이행 등

농업정책보험금융원

- 재해보험사업자, 지역 대리점 및 재해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·위법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현장 조사하여 해당 직원 및 해당기관의 징계, 재해보험가입자의 계약 취소 등을 재해보험사업자에 요구
(재해보험사업자는 위의 조치결과를 자체없이 제출)

6 성과측정단계

《성과지표 측정》

- 매년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면적, 대상품목 증가수 등을 기준으로 성과 지표를 측정
 - 주요 성과지표 : 가입면적, 대상품목 증가 수(목표는 매년 초 사업추진 계획에 따름)
 - 성과지표 측정(매년) : 연도별 보험사업 추진 완료후 가입면적, 대상품목 증가 수 등을 근거로 성과지표 측정

《만족도 조사》

- 정책 사업에 대한 호응도 및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 방문·설문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
 - 조사시기 : 사업기간 중

- 조사대상 : 농업인
- 조사방법 : 전화, 인터넷 등을 활용한 설문조사
- 주관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(필요시 재해보험사업자를 통해 위탁조사 가능)

7.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

《사업평가》

가. 원칙

- 농작물재해보험 사업계획상에 설정된 가입품목 확대 및 보험가입면적, 보조금 집행실적, 농업인 민원·제안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사업에 반영

나. 사업평가 요령

- 평가주관 및 기간 : 농업정책보험금융원, 매년 1월
- 평가대상 : 재해보험사업자
- 평가기준 : 전년도 가입품목 및 지역 확대 수, 보험가입률, 가입면적 및 가입농가 증감율, 보조금 집행 현황, 민원 발생현황 등

다. 사업평가 실시 절차

- 재해보험사업자는 평가기준 등에 따라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·시행 (3월중)
- 재해보험사업자는 매 연도말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성과를 심사·분석하여 품목별·지역별 가입현황, 보조금 집행현황(매년 12월말 기준), 보험상품 개선 등 사업평가결과서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(익년 1월 31일까지)

라. 평가 후 사후관리

-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제출한 사업평가결과서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고 부진 지역 또는 항목에 대해서는 중점 관리
-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

《환류》

- 재해보험사업자의 사업성과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효과 제고

<붙임 1>

사업지역 및 가입기간

| 구 분 | 사 업 지 역 | 가입기간 |
|------|--|--|
| 본 사업 |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 (수박 · 딸기 · 오이 · 토마토 · 참외 · 풋고추 · 호박 · 국화 · 장미 · 파프리카 · 멜론 · 상추 · 부추 · 시금치 · 배추 · 가지 · 파 · 무 · 백합 · 카네이션) | 전 국 2월 ~ 11월 |
| | 벼섯재배사 및 벼섯작물 (표고 · 느타리) | 전 국 2월 ~ 11월 (표고 원목재배는 6~7월) |
| | 사과 · 배 · 단감 · 뾰은감 | 전 국 2월 ~ 3월 (단, 봄동상해 특약은 3.23까지) |
| | 벼 | 전 국 4월 ~ 6월 |
| | 밤 | 전 국 4월 |
| | 대추 | 전 국 4월 |
| | 감귤 | 전 국 4월 |
| | 고추 | 전 국 4월 ~ 5월 |
| | 고구마 | 전 국 4월 ~ 6월 |
| | 옥수수 | 전 국 4월 ~ 6월 |
| | 감자 | 전 국 (단, 봄감자는 강원도) 5월 ~ 6월 (가을감자) 7월 ~ 9월 |
| | 참다래 | 부산 · 광주 · 울산 · 전남 · 경남 · 제주 (6개 시 · 도) |
| | 콩 | 전 국 6월 ~ 7월 |
| | 마늘 | 전 국 (난지형) 10월 ~ 11월 (한지형) 10월 ~ 11월 |
| | 양파 | 전 국 10월 ~ 11월 |
| | 인삼 | 전 국 10월 ~ 11월 |
| | 자두 | 전 국 11월 |
| | 매실 | 전 국 11월 |
| | 포도 | 전 국 11월 |
| | 복숭아 | 전 국 11월 |
| | 배(적과전 종합위험) | 전 국 11월 |

| 구 분 | 사 업 지 역 | 가입기간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|
| 시 범 사 업 | 시설작물 (미나리·쑥갓) | 전 국 2월~11월 |
| | 벼섯작물 (양송이·새송이) | 전 국 2월~11월 |
| | 양배추 | (제주)제주·서귀포 7월~8월 |
| | 차 | (전남) 보성(경남) 하동 10월~11월 |
| | 밀 | 광주광역시, (전북) 익산·김제, (전남) 해남, (경남) 사천, (충남) 천안·예산 10월~11월 |
| | 오디 | (전북) 부안, (전남) 영광, (경북) 상주·안동 11월 |
| | 복분자 | (전북) 고창·정읍·순창, (전남) 함평·담양 11월 |
| | 오미자 | (경북) 문경·상주, 예천, (충북) 단양, (전북) 장수 11월 |
| | 무화과 | (전남) 영암 11월 |
| | 유자 | (전남) 고흥 11월~12월 |
| | 단감(적과전 종합위험) | 전 국 11월 |
| | 사과(적과전 종합위험) | 전 국 11월 |
| | 떫은감(적과전 종합위험) | 전 국 11월 |
| | 메밀 | 미정 미정 |
| | 브로콜리 | 미정 미정 |

- ※ 판매기간은 월단위로 기재하였으며, 구체적인 일단위 일정은 ①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보험판매전 지자체에 별도 통보하며 ②보험사업자는 보험판매전 홈페이지 및 보험 대리점(지역 농협) 등을 통해 대농업인 홍보 실시
- ※ 농업용시설물 및 시설작물은 태풍 등 기상상황에 따라 판매기간 중 일시 판매 중지될 수 있음
- ※ 밑줄 친 품목 및 사업지역은 '18년 신규 도입 및 신규판매 지역임

<붙임 2>

보장방식별 품목별 보장유형

| 구분 | 보장방식 | 품목 | 보장수준(보험가입금액의 %)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| 60 | 70 | 80 | 85 | 90 |
| 과수작물 | 특정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| 사과, 배, 단감, 떫은감 | -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| 밤, 대추, 참다래, 매실, 자두, 복숭아, 포도, 오미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| 유자 | ○ | ○ | ○ | - | - |
| 밭작물 | 종합위험방식 실손보장 | 비가림시설(포도, 대추) |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(단, 괴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) 내에서 손해액의 10%를 적용하고,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| | | | |
| | 종합위험방식 과실손해보장 | 오디, 감귤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적과전 종합위험방식 | 배, 단감, 사과, 떫은감 | -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수확전 종합위험방식 | 복분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| 무화과 | ○ | ○ | ○ | - | - |
| 밭작물 |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| 고구마, 옥수수, 봄 감자, 콩, 가을감자, 마늘, 차, 양파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| 양배추 | ○ | ○ | ○ | - | - |
| | 특정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| 인삼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| 종합위험방식 인삼손해보장 | 해가림시설 | 자기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의 1% 해당금액으로 적용 | | | | |
| |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| 고추 | 자기부담금은 잔존보험가입 금액의 5% 해당금액으로 적용 | | | |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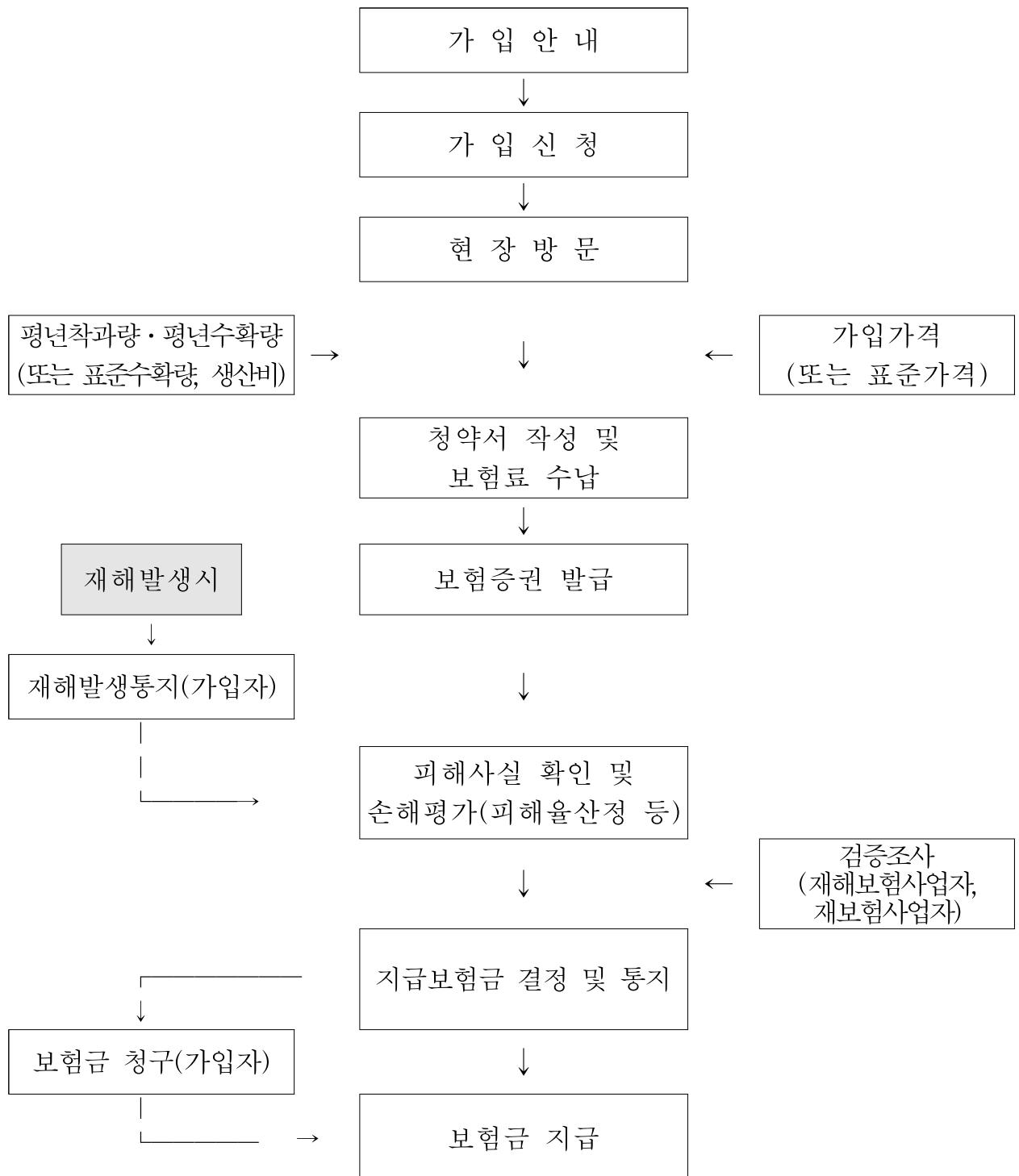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보장방식 | 품목 | 보장수준(보험가입금액의 %) | | | |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----|----|----|----|
| | | | 60 | 70 | 80 | 85 | 90 |
| 벼·맥류 | 종합위험방식 수확량감소보장 | 벼, 밀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
| 원예시설 | 종합위험방식 실손보장 | 농업용시설물 (단동하우스, 연동하우스, 유리온실), 부대시설 |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(단,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) 내에서 손해액의 10%를 적용하고,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| | | | |
| |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| 시설작물(수박, 딸기, 오이, 토마토, 참외, 풋고추, 호박, 국화, 장미, 파프리카, 멜론, 부추, 시금치, 상추, 배추, 가지, 파, 무, 백합, 카네이션, 미나리, 쑥갓) |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| | | | |
| 버섯작물 | 종합위험방식 실손보장 | 버섯재배사, 부대시설 | 자기부담금은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한도(단, 피복재 단독사고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한도) 내에서 손해액의 10%를 적용하고,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음 | | | | |
| | 종합위험방식 생산비보장 | 느타리버섯, 표고버섯, 양송이버섯, 새송이버섯 | 손해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전액 보상 | | | | |

※ (자기부담금) 보장형 별 보험가입금액의 40%, 30%, 20%, 15%, 10% 해당액은 자기부담금으로서 보험계약 시 계약자가 선택하며, 자기부담금 이하의 손해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.

※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 따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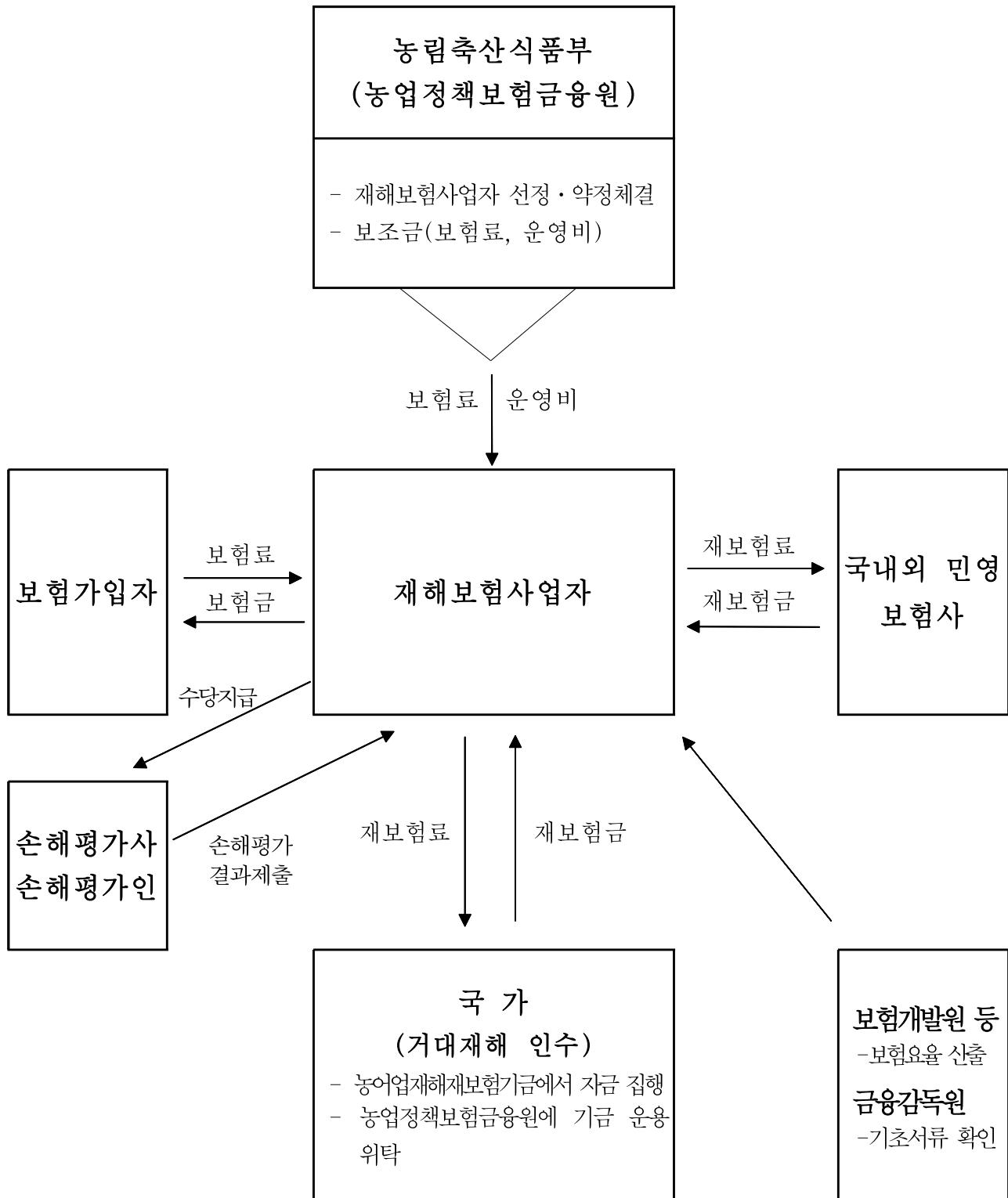
<붙임 3>

농작물재해보험 추진절차



<붙임 4>

보험 및 재보험 운영 체계



<붙임 5>

농업경영체 등록 대상, 절차 및 방법

○ 등록대상 : 농업인 및 농업법인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에 따른 농업인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법인

○ 등록정보 : 5개 부분 총 56개 항목

- 농업인(경영주 및 경영주외 농업인)·농업법인 일반현황, 농지·축산정보 등
 - * 불법(무단) 점유 등으로 지속적인 농업 활동이 불가능한 농지 등의 정보는 제외

○ 등록절차 : 신청서 작성·제출 → 접수 및 전산등록 → 등록확인서 발급

- 처리기관 :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(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)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(이하 농관원) 지원 또는 사무소

| 등록절차 | 등록 방법 |
|-----------|---|
| 신청서 작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「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」 서식에 따라 정보기재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신청서는 농관원 홈페이지(www.naqs.go.kr)나 농관원 지원·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 |
| 신청서 제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「농업경영체 등록신청서」를 작성하여 방문, 우편, 팩스,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주소지 관할 농관원 지원·사무소에 제출 |
| 접수 및 전산등록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신청서 내용 확인 후 농업경영체 고유등록번호 부여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제출서류 확인 및 필요 시 신청사항에 관한 현지조사 등 병행 |
| 등록확인서 발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농업인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및 확인서 발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직불금·경영체 통합 신청 시 90일 이내에 발급 |

※ 관련 문의 :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콜센터(☎ 1644-8778)